

제33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4. 12. 20.)에서 의결된
'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'을 아래와 같이
공포한다.

2024년 12월 20일

고흥군의회 의장

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written over the red seal.

고흥군의회 규칙 제2024- 호

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5항 전단 중 “의회사무과 의정팀장”을 “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
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회의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되, 간사는 <u>의회사무과</u> <u>의정팀장</u>이 된다. <종전 제4항 에서 이동 2020.12.18.></p> <p>⑥ (생 략)</p>	<p>제6조(회의) ① ~ ④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팀장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